#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85 발의연월일: 2024. 10. 2.

발 의 자:이병진・이기헌・서미화

성일종 · 소병훈 · 주철현

어기구 · 이상식 · 권향엽

송재봉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"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", "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", "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" 등 그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와 그 회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함에도 실제 광범위한 신원조사, 단순히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증인의 범 죄경력조회를 회보받는 사례도 발생 가능하여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바,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조회 목적 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 호하고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함(안 제6조제2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"를 "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회 및 회보는 조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제2항"을 "제3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6조제3항"을 "제6조제4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제6조제4항"을 "제6조제5항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6조(범죄경력조회 · 수사경력조 | 제6조(범죄경력조회 · 수사경력조 회 및 회보의 제한 등) ① 수 회 및 회보의 제한 등) ① ---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 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. -----할 수 있다. 다만, 제8조의2제2 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 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 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 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 다. 1. ~ 10. (생략) 1. ~ 10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② 제1항에 따른 조회 및 회보 는 조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 다. ② ~ ⑤ (생 략) ③ ~ ⑥ (현행 제2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) 제10조(벌칙)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(벌칙) ① ------

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	- <u>제3항</u>
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	
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	
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
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	② <u>제6조제4항</u>
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	
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	
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	
금에 처한다.	
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	③ <u>제6조제5항</u>
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	
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	
형에 처한다.	